

203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) 변경 의견청취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939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4년 5월 2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산업 및 상권 활성화, 도시환경 정비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,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「203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」을 수립 및 고시('23.2.16.)한 사항과 관련하여,
- 나. 개방형녹지 확보 기준, 용적률, 건폐율, 높이 계획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개방형녹지 개념 등 재정립을 통한 실효성 있는 녹지조성 유도
- 유연한 건축계획을 위한 개방형녹지 개념 확장
 - 개방형녹지 의무비율 조정
 - 대지 규모별 개방형녹지율 인정한도 설정 등
- 나. 용적률 인센티브 및 건폐율 조정
- 의무면적 초과 공개공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조정
 - 지역 필요시설 용도(문화인프라, 생활SOC) 등 허용인센티브 조정
 - 친환경분야 용적률 인센티브 조정
 - 가로활성화 용도 유도 등을 위해 건폐율 조정 등

다. 높이 완화기준 조정

- 공개공지 초과 조성 높이완화 삭제
- 지역특수성 고려 등 공공성이 특별히 인정될 경우 높이완화 추가 등

3. 추진경위

- '23.02.16. : 2030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
- '24.01.~05. : 기본계획 변경(안) 수립 및 전문가 자문
- '24.05. : 주민공람(예정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및 제6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의견청취사항

※ 작성자 :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최대규 (☎ 2133-4635)